

이 문서는 이해를 돕기 위한 참고의 문서입니다.
정식 문서는 보건소가 발행한 일본어 문서입니다.

⑤

제 _____ 호
년 월 일

_____님

_____보건소장

입원 기간의 연장에 대하여(통지)

년 월 일자로 보제 호로 통지한 귀하의 입원에 대하여
감염증의 예방 및 감염증 환자에 대한 의료에 관한 법률(이하[법]이라 함.)
제 20 조 제 4 항(제 26 조 및 제 26 조 2 에 준함)의 규정에 의하여
하기와 같이 입원기간을 연장합니다.

1 입원 의료기관

- (1) 명칭
- (2) 소재지

2 입원 기간

년 월 일부터 년 월 일까지

3 입원 연장의 이유

- (1) 결핵 만연의 방지를 위해
- (2) 결핵 증상이 인정되기 때문에

4 기타

귀하는 법 제 22 조 제 3 항(법 제 26 조에 준함)의 규정에 근거하여 퇴원의 요구가 가능합니다.
그 결과, 본 감염증의 병원체를 보유하고 있지 않음, 또는 감염증 증상의 소실이 확인된 경우는
법 제 22 조 제 1 항(법 제 26 조에 준함)의 규정에 근거하여 입원을 종료합니다.
또한, 법 제 24 조 2 제 1 항의 규정에 근거하여 입원 중 귀하가 받은 대우에 대하여
문서 또는 구두에 의한 민원을 제기 할 수 있습니다.

담 당: _____